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재가합124, 2020재가합66 판결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반환 · 승계참가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재가합124, 2020재가합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46833 판결

전 문

원고(재심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 전은진, 박철규, 배재범, 양유미

원고주식회사 A

피고(재심원고)E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AA

변론 종결2020. 5. 29.

판결 선고2020. 6. 19.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4683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 선택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 또는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에 피고(재심원고)는 5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5.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 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의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승계참가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의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재심원고)의 주장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등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대상판결이 2009. 8. 14.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2018. 12. 21.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주식회사 A 또는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이 서울 서초구 Q 대지 위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재심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와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상주

판사 김원목

판사 권혁준